

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
(하태경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9383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7. 9. 14.

발 의 자 : 하태경·김세연·박인숙  
유승민·유의동·윤재옥  
이종구·이종배·정양석  
정운천·주호영 의원  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인터넷을 통해 급격히 유통되고 있는 가짜 뉴스는 그 공유·확산의 속도와 범위가 상당하여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. 우리나라 역시 대부분 포털사이트를 통해 뉴스를 접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로 공유하는 등 인터넷을 통한 뉴스 소비가 매우 큰 실정으로서 가짜 뉴스에 취약함.

따라서 학생들은 물론 전 세대에 걸쳐 인터넷에서 올바른 정보를 판단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능력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높아짐. 이에 가짜 뉴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으로서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분석하여 비판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.

이에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각종 교육기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의 올바른 이해·분석·비판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, 이에 대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30

조의8).

법률 제 호

##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0조의8의 제목 중 “관련”을 “및 정보의 이해·분석·비판 관련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예방 및 해소를”을 각각 “예방·해소 및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의 올바른 이해·분석·비판을”로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0조의8(인터넷중독 <u>관련</u> 교육)</p> <p>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터넷중독의 <u>예방 및 해소</u>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</p> <p>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인터넷중독의 <u>예방 및 해소</u>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③·④ (생략)</p>	<p>제30조의8(인터넷중독 <u>및 정보의 이해·분석·비판</u> 관련 교육) ①</p> <p>-----<u>예방·해소 및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의 올바른 이해·분석·비판</u>을-----</p> <p>-----.</p> <p>② -----</p> <p>-----<u>예방·해소 및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의 올바른 이해·분석·비판</u>을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·④ (현행과 같음)</p>